

사이버쇼핑몰 불법·불량제품 물렸거라!

- 기술표준원, 사이버쇼핑몰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
 - 온라인 안전정보망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

최근 소비자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사이버쇼핑몰 안전관리 규정 정비, 사업자·단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불법제품 유통방지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정보의 지속적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 소비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입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으로 안전검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어 왔다.


〈사이버쇼핑몰 유통업체 및 유통량 현황〉

연 도	'01	'02	'03	'04	'05
업 체 수	2,009	2,846	3,354	3,489	4,355
판매실적(10억원)	3,347	6,030	7,055	7,768	10,675
소비자상담건수	5,288	10,760	20,165	17,673	25,141

* 자료 : 통계청 및 소비원 자료('06. 3월)

※ 사이버 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5,288건('01) → 20,165건('03) → 25,141건('05)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우선적으로 사업자 스스로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자율적 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업자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제품안전 자율이행' 마크()를 게재·홍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가 사이버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일반매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소비자 등이 실시간으로 안전검사 등의 제품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위해정보 및 불법제품 유통정보의 신고·접수를 위한 정보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사이버쇼핑몰 사업자·관련단체·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쇼핑몰 제품안전관리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9일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자·관련단체·소비자가 참여하는 ‘사이버몰안전관리협의회’(가칭)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등 세부추진방안이 논의되었고, 기술표준원과 사업자단체가 안전관리 업무협력을 체결, 사이버몰 유통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및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기업-소비자-정부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어 소비자가 사이버쇼핑몰에서도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EP마크 따기는 어렵게, 지원은 알차게!!

NEP마크 신청시 선행기술조사자료 제출 의무화, NEP마크 제품 공공기관 20%이상 의무구매 법제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최갑홍)은 신제품인증(NEP마크 : New Excellent Products) 신청시 신청제품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인증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10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음

강화된 인증심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신청제품에 대해「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혁신적으로 개선·개발된 대체신기술이어야 NEP마크 신청이 가능하며,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아이디어 제품 등은 NEP마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NEP마크제품의 신뢰성을 한단계 높였다고 밝힘

한편, 개정 법령에 따라 NEP마크를 획득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마크를 받은 제품은 지금보다 알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첫 번째로, 앞으로 400여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 중 NEP마크제품이 있는 경우,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업체의 매출액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할것으로 보며,

기존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는 산업자원부장관 공고로 운영됨에 따라 강제성이 없었으나, 이번에 의무구매사항을 동 법률 개정(4. 28)과 하위 법령 개정사항에 반영 조치하여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됨

두 번째로, NEP마크 획득업체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국민은행 등 시중 4개은행에서 신청 건당 최대 50억원의 저금리 기술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자금압박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것으로 예상됨

또한, NEP마크제품에 대해 구매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품질보장사업(이행·보증·배상책임보험 등)을 추진하는데, 인증업체들은 기존 일반제품보다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누리게 됨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이번 바뀌는 NEP마크 인증심사절차 등에 관한 집중적인 홍보를 위해 11월달부터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관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관련 책자 및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임

기술표준원은 NEP마크의 운영근거가 기존의 고시에서 법령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인증심사 기준도 강화할 방침으로 있어, 앞으로 NEP마크의 신뢰도가 질적으로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힘

